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면제에 관한 연구*

민 주 희**

-
- I. 서 론
 - II. CISG에서 권리적합의무 면제
 - III. UCC에서 권리적합의무 면제
 - IV. CISG와 UCC에서 권리적합의무 면제 비교
 - V. 결 론
-

주제어 : 권리적합의무, 담보의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미국통일상법전

I. 서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이 물리적으로 계약상 적합한 것 인지에 대하여 주로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이 증대하면서 매도인이 권리적으로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결국 점차 기술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물품에 화체된(incorporated)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및 적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합의는 보편화 되어가고 더욱 세 밀해 질 수 밖에 없다. 매도인이 권리적으로 적합한 물품을 인도 했는지의 여부는

* 오원석 교수님 정년퇴직 기념 논문집에 본 논문을 게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E-Mail : jhmin07@kmu.ac.kr

계약상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계약당사자들은 그들의 거래상황과 형편에 따라 적합한 준거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 통일법규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 CISG로 칭함)이 계약의 준거법으로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CISG는 제41조에서 물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와 제42조에서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중의 하나로 미국의 거래당사자와의 계약체결시 계약의 준거법으로써 CISG가 적용 될 수도 있지만 계약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미국의 국내법인 미국통일상법전(이하 UCC로 칭함)을 선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UCC상 권리적합의무의 면제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이다. UCC에서는 제2-312조 제1항의 물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of Title)와 제3항의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against Infringement)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CISG와 UCC에서는 각각 물권과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매도인은 그러한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는 계약상 주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혹은 매수인이 제공한 지시에 따른 결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서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될 수 있는 CISG와 UCC에서의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CISG와 UCC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면제 규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계약당사자들이 그들의 계약에 더욱 적합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CISG와 UCC에서 매도인에게 권리적합의무의 면제를 허용함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오원석(2002)과 오수용(2014)은 물품적합의무에 대한 매도인의 면책을 다루었고, 김선국(2015)은 CISG 제79조에 의한 면책규정을, 허광욱(2013)은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매도인의 면책에 대하여는 물품적합의무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존재하나 권리적합의무의 면제에 대하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가 미진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의 면제에 대하여 고찰하므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겠다.

II. CISG에서 권리적합의무 면제

1. 물권을 기초로 한 권리적합의무 면제

1) 매수인의 동의

CISG 제41조에서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령할 것을 동의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수인의 동의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단순히 인지(*mere knowledge*)한 것 이상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운송인 또는 창고업자가 물품에 대한 유치권(*lien*)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매도인이 은행에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한 것은 매수인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수령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충분하지 않다.²⁾ 즉 매도인의 일방적인 통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매수인이 권리상 하자가 있는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언어 혹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하지만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³⁾ 예를 들어 매도인이 창고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미지급된 창고료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대금과 상계처리를 매도인이 요구하고 이 요구에 응하여 매수인이 미지급된 창고료를 지불한다면, 매수인이 창고업자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물품의 인수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할 것이다.⁴⁾ 일반적으로 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의 유치권은 창고료 또는 운임이 지급될 때 그들의 권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매수인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의 권리 하에 있는 물품을 수령할 것을 동의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또한 매도인이 명백하

2)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656.

3) *Ibid.*, Stefan Kröll,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H. Beck, 2011, p. 642.

4) Ingeborg Schwenzer, *ibid.* 매도인이 제3자의 클레임 존재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항변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매수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반대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한, 침묵을 통해 매수인이 동의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Enderlein and Maskow,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ceana, 1992, pp. 165~166).

계 물품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고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그러한 권리가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할지라도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하지 않고 인수하는 경우 매수인이 행동을 통해 동의를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결국 매수인이 수월하게 제3자의 권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매수인과 제3자가 같은 그룹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기타의 이유 등으로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⁶⁾

사실상 물품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매수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제41조에 의한 매도인의 책임면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⁷⁾

한편 매수인의 동의가 존재하여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동의는 계약체결 시에 존재하여야 하지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3자의 클레임이 존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가 계약체결 시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⁸⁾

2) 적용배제합의

CISG 제6조⁹⁾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제41조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또한 제8조¹⁰⁾에서 계약당사자들의 진술 또는 행위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도난차량 사건(Stolen automobile case)¹¹⁾에서 매도인(독일)과 매수인(벨라루스)은 보증조항 없이(without warranty) 중고

5) Stefan Kröll, *op. cit.*, p. 642.

6) *Ibid.*

7)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 389.

8) Enderlein and Maskow, *op. cit.*, p. 165.

9) CISG 제6조: 계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의 효력을 감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10) CISG 제8조: 계약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 행위는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도를 확정함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확립된 관습, 관례 및 기타 당사자들의 후속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차 매매계약을 2001년 5월 18일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1년 5월 28일, 이 차량이 1998년 도난된 차량이었다는 이유로 벨라루스에서 압류되었다.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였고 매도인은 차량의 반환을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당사자들간에 합의한 보증조항 배제(the exclusion of contractual warranty)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매매계약이 보증조항을 배제한 상태로 체결되었기에 CISG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조항을 배제한 것은 매도인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권리적으로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CISG 제41조에 의한 권리적합의무에도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제30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주된 의무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보증조항 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 의무를 배제하도록 허용한다면 계약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중요한 의무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고자 했던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권리적합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판시되었다.

사실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는 CISG에서 다루지 않기에 이러한 유효성의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 정해진 준거법에 따라 판단된다.¹²⁾ 계약당사자들이 권리적합성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더라도 위의 도난차량 사건에서처럼 국제사법에서 정해진 준거법에 의해 그러한 합의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또한 제12조¹³⁾에 의하면 제96조¹⁴⁾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유보선언을

11) Germany 21 March 2007 Appellate Court, Case No. 9 U 1218/06.

12) CISG 제4조: 본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율한다. 특히 본 협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나 그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관습의 유효성에는 관계되지 아니한다.

13) CISG 제12조: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과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은 당사자가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계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조항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14) CISG 제96조: 국가의 법률이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입증에 서면을 요구하는 계약국은 제12조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 일방이 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한 계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들의 서면이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즉 제9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유보선언을 한 계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면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 권리적합의무면제 합의는 CISG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합의의 유효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

2.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권리적합의무 면제

1) 매수인의 인지

CISG 제42조 제1항 a호에서는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knew or could not have been aware of) 경우에 매도인의 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5조에 제3항에서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을 경우(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매도인은 물품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하지만,¹⁵⁾ 제41조하에서 매수인의 동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권리적합무가 면제되는 경우보다는 책임 면제의 적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제42조에서는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만으로도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되지만 제41조에서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알았거나(the buyer knew)’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존재를 인지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식재산권자가 매수인에게 직접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임을 알리거나, 지식재산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그의 권리에 기초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고 클레임을 제기당한 자가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경우

15) CISG 제35조 제3항에서 매도인의 면책은 제2항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항의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면책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제2항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의 적합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기준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상황은 배제되기 때문이다(P. Schlechtriem and P. Butler, *UN Law on International Sale -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pringer, 2009, para. 144; Stefan Kröll, *op. cit.*, p. 528).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매수인은 제3자의 지식재산권 혹은 클레임의 종류나 성질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한 것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알려진 사실에 기초하여 제3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도 해당될 것이다.¹⁷⁾

‘모를 수 없었던(*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지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조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⁸⁾ 그러나 매수인에게 물품의 전매 또는 사용이 예상된 국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항상 그러한 권리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¹⁹⁾ 그러나 매수인은 물품 자체에 대하여 혹은 물품의 제조방법 및 특성 등에 대하여 매도인만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상 조사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조사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할 수 있다.²⁰⁾ 만일 계약상 매수인에게 조사의 의무를 부과하고 매수인이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존재와 권리침해로 인한 클레임의 제기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매도인은 조사를 통해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모를 수 없었다고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려 할 것이다.²¹⁾

제42조 제2항 a호에서의 매도인 면책은 매수인의 무관심한 태도를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물품의 전매 또는 사용이 예상된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매수인에게 조사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조사를 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제7조에 의한 신의칙에 의거하여, 그리고 제8조에 따라 그러한 상황에서 거래상 상대방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는 일반원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거나, 판촉활동 혹은 광고 등을 통해 유명해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매수인은 그러한 권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²²⁾

16) Stefan Kröll, *op. cit.*, p. 655.

17) Stefan Kröll, *ibid.*, Ruth M. Janal, “The Seller’s Responsibility for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Vienna Sales Convention”, *FS Kritzer*, 2008, p. 209.

18) John O Honnold, *op. cit.*, p. 339.

19) Stefan Kröll, *op. cit.*, p. 656.

20) *Ibid.*, p. 658.

21) Christian Rauda and Guillaume Etier, “Warranty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ndoba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2000, p. 55.

22) Joseph J. Schwerha, “Warranties against Infringement in The Sale of Goods: A Comparison of

위조 가구사건(counterfeit furniture case)²³에서 “Le C”라는 가구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독점권은 C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다. 스페인 매도인과 프랑스 매수인은 “Le C” 브랜드의 위조가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Le C”의 위조가구를 자신의 창고에서 전시하였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C회사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조가구의 전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이 후로 9개월가량 위조가구를 계속 전시하였다. 법원은 법적으로 보호 받는 지식재산권을 표창한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매수인은 지식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가구를 전시하였으므로 매수인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제42조에 의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인지하였는지를 판단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계약 체결 전에 인테리어분야에서 “Le C”가구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다. 더군다나 매수인이 수입한 위조 가구는 진품이 수년 동안 잡지에 실렸었고, 박물관에서 주최한 전시회에서 전시가 되었던 물품이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Le C”가구에 대하여 완전히 인지(perfect knowledge)한 상태였으므로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가구가 위조임을 모를 수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Le C”의 지식재산권을 모를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Le 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인도하였더라도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는 면제된다.

매도인이 제4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인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시이다. 만일 계약 체결 이후에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면,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판단 시기 이후에 매수인이 인지하였으므로 계약에 따라 매도인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후에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인지하였다면 제43조에 의해 그러한 사실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 합리적인 기간 산출시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인지한 때(the buyer has become aware or ought to have become aware of the right or claim)’를 기산일로 판단하게 된다.

UCC §2-312(3) and Article 42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95, p. 670.

23) 23 November 2004, France District Court Versailles.

2) 기술적 설계 등을 매수인이 제공한 경우

CISG 제42조 b호에서는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적 설계, 디자인, 공식 또는 기타의 명세를 매도인이 따른 결과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침해 또는 그로 인한 클레임이 제기된다면 제42조에 의한 매도인의 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80조에 의하면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위반을 일으킨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그러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침해 또는 그로 인해 클레임이 발생한 원인이 매도인의 과실이 아니라 매수인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결과이므로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이 제공한 기술적 설계 등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전매 또는 사용이 예상된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의 존재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할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²⁴⁾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전매 또는 사용이 예상된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존재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를 따른 결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매도인은 신의칙에 근거하여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²⁵⁾ 그러나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의 지시에 따른 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위반(an ancillary duty)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²⁶⁾ 한편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에 따른 결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면 매도인은 권리적합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²⁷⁾ *Eximin v. Textile and Footwear* 사건²⁸⁾에서 벨기에 매수인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매도인과 데님부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츠 디자인을 제공하고 데님부츠에 “V”라는 마크를 부착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마크는 미국에 등록된 리바이스 상표였으므로 “V”마크가 부착된 데님부츠가 미국

24) Christian Rauda and Guillaume Etier, *op. cit.*, p. 57.

25) Enderlein and Maskow, *op. cit.*, p. 170; Ingeborg Schwenzer, *op. cit.*, p. 671.

26) Ingeborg Schwenzer, *ibid.*

27) *Ibid.*

28) 22 August 1993, Israel Supreme Court.

에 수입될 때 상표권 침해라는 이유로 미국세관에 압수되었다. 결국 테넬부츠는 “V”마크를 제거하여 수입 통관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리바이스 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츠 디자인을 제공하면서 “V” 마크를 부츠에 부착하도록 요청했을 때, 매도인은 리바이스라는 유명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적어도 매수인의 의도를 의심했어야 했고 매수인이 제공한 디자인과 상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생산한 부츠를 인도하였다. 결국 법원은 매수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바이스 상표를 계약체결 시에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기에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이스 상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신의칙에 근거하여 매도인도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언급하였다. 즉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조차 조사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리바이스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켜 각 당사자가 손실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법원은 판결하였다.

한편 매수인이 제공하는 기술적 설계 등이 충분히 명확해야 매도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권리적합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²⁹⁾ 만일 매수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 또는 매수인이 드러낸 자신의 의도가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의 임의적 판단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조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매수인의 지시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³⁰⁾ 여기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에 따른 결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는지의 여부는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면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³¹⁾ 즉 매수인이 자신이 제공한 지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를 따른 결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면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의 위반을 논할 수 없다.

29) Stefan Kröll, *op. cit.*, p. 658.

30) Ingeborg Schwenger, *op. cit.*, p. 670.

31) *Ibid.*

3) 적용배제합의

제41조와 마찬가지로 CISG 제6조에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제42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적용배제의 합의에 대한 유효성의 문제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³²⁾ 제42조는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권리적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의 제3자의 권리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면 계약상 당사자들의 적용배제 합의가 있었다라도 매도인의 책임면제를 허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³³⁾

III. UCC에서 권리적합의무 면제

1. 명확한 언어를 통한 적용배제합의

UCC 제2-312조³⁴⁾ 제2항에서는 명확한 언어(*specific language*)를 통해 혹은 거래의 상황에 따라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UCC 제2-312조 제1항은 물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of Title*)를, 제3항은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against Infringement*)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매도인 면책이 사실상 제1항뿐만 아니라 제3항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32) CISG 제4조: 본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율한다. 특히 본 협약에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나 그 어떠한 조항 또는 어떠한 관습의 유효성에는 관계되지 아니한다.

33) Ingeborg Schwenzer, *op. cit.*, p. 672.

34) UCC § 2-312 : (1) Subject to subsection (3), there is a contract for sale a warranty by the seller that (a) the title conveyed shall be good and its transfer rightful and (b)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free from any security interest or other lien or encumbrance of which the buyer at the time of contracting has no knowledge. (2) A warranty under this section may be disclaimed or modified only by specific language or by circumstances that give the buyer reason to know that the seller does not claim title, that the seller is purporting to sell only the right or title as the seller or a third person may have or that the seller is selling subject to any claims of infringement or the like. (3) Unless otherwise agreed, a seller that is a merchant regularly dealing in goods of the kind warrants that the goods shall be delivered free of the rightful claim of any third person by way of infringement or the like but a buyer that furnishes specifications to the seller must hold the seller harmless against any such claim that arises out of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³⁵⁾ 제2-312조의 순서를 보더라도 제3항의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는 제2항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1항과 제3항의 담보의무 전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자 의도했다면 담보규정이후에 면책규정이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2항의 면책은 제1항뿐만 아니라 제3항의 담보의무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³⁶⁾ 만일 제1항의 물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에만 면책을 적용하고자 했다면 제2항에서 명백히 제1항의 경우에 적용되는 면책조항임이 언급되었을 것이나 제2항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볼 수 없다.³⁷⁾

매도인의 담보의무 면제는 그러한 의도를 명백하게 언급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상 어떻게 표현되어야 충분히 매도인의 면책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Jones v. Linebaugh* 사건³⁸⁾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는 Bugatti 자동차의 매매를 제안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자신이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렸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매도인은 자동차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으며 몇 가지 서류작업이 남아있음을 통지하였고 그로부터 몇 주 후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제3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제2-312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의무가 면제되기 위하여 그러한 의도가 명확한 언어(*specific language*)로 계약상에 언급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본 사건에서 매도인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언어가 정확하거나 명료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매도인이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과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만 매수인에게 이전하겠다’는 계약서에서의 문구는 매도인의 담보의무를 면제시킬 만큼 정확한 언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Croly v. Pollard* 사건³⁹⁾을 인용하면서 ‘명확한 언어’는 부주의함 없이 정밀하게 언급함으로써 그리고 관련된 사안들을 빠짐없이 기재함으로써 모호한 표현이 없고 명료한 언어로 나타나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의무 면제는 계약상 명확한 언어(*specific language*)를 통해 허용이 될 것이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35) Joseph J. Schwerha, *op. cit.*, p. 471.

36) James J. White and Robert S. Summer, *Uniform Commercial Code*, West Publishing Co, 2010, p. 503; Joseph J. Schwerha, *ibid.*

37) Joseph J. Schwerha, *ibid.*

38) 34 Mich. App. 305, 191 N.W. 2d 142.

39) 71. Mich. 612, 39 N.W. 853.

2. 거래의 상황에 의한 매도인 면책

UCC 제2-312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의무는 상황에 의해서도 면제될 수 있다. MAS Corp. v. Thompson⁴⁰⁾에서 MAS는 Holiday Inns와의 프랜차이즈계약이 종료되면서 모텔의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였다. 이에 MAS는 Thompson과 모텔에 사용할 2개의 간판제작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의 간판에 대하여 설명된 부분은 이전에 사용된 간판을 기초로 하되 Holiday Inns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적용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간판이 설치된 후, MAS는 Thompson이 계약상 제2-312조 제3항에 따르는 담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했으나 Holiday Inns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담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Thomps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Thompson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의 문구를 삽입한 것은 MAS가 요구하는 짧은 기간 내에 간판제작이 어려웠으므로 단지 기존에 사용했던 간판을 재사용하면서 Holiday Inns의 상표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MAS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계약서에 삽입된 ‘위의 간판에 대하여 설명된 부분은 이전에 사용된 간판을 기초로 하되 Holiday Inns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적용될 것이다’라는 문구는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Holiday Inns와의 프랜차이즈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Holiday Inns의 물품들이 MAS의 모텔에서 발견됨으로 Holiday Inns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MAS는 Holiday Inns의 클레임으로 인해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며 간판을 제작함에 있어 Holiday Inns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Thompson이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Thompson이 MAS의 요청에 따라 제작한 간판이 Holiday Inns의 상표와 유사함을 통지하였을 때도 MAS는 Thompson가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주지시켰다. 이러한 MAS의 행동은 처음부터 Thompson에게 담보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없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MAS에게 있음을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Thompson은 자신이 제작한 간판이 Holiday Inns의 상표권을 침해한다 할지라도 MAS가 이미 그러한 상황을 의도하고 있었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대하여도 MAS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MAS가 계약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Thompson이 인지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Thompson은 계약상 담보의무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40) 302 S.E. 2d 271 (N.C. App. 1983).

IV. CISG와 UCC에서 권리적합의무 면제 비교

1. 적용배제 합의

CISG는 제41조와 제42조에서 명시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제41조와 제42조의 권리적합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계약당사자들의 진술 또는 행위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서면이외의 계약당사자들간의 합의는 제96조의 유보선언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계약당사자들간의 합의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UCC 제2-312조 제2항에서는 CISG와는 달리 합의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의무 면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항의 물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of title)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제3항의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한 담보의무(warranty against infringement)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제1항뿐만 아니라 제3항의 담보의무에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는 명확한 언어(specific language)를 통해 혹은 거래의 상황에 따라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ISG에서는 매도인의 면책이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UCC에서는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합의를 요구하여 매도인의 면책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명확한 언어’라는 것은 부주의함 없이 정밀하게 언급함으로써 그리고 관련된 사안들을 빠짐없이 기재함으로써 모호한 표현이 없고 명료한 언어로 기재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매도인의 면책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CISG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판례⁴¹⁾를 통해 권리적합의무는 매도인의 주요한 의무로서 이의 적용 배제를 제한하고자 하는 시

41) 도난차량 사건(Stolen automobile case), Germany 21 March 2007 Appellate Court, Case No. 9 U 1218/06.

도를 엿볼 수 있었으므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의 면제에 대한 합의에 대하여는 CISG나 UCC 모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술적 설계 등을 매수인이 제공한 경우

CISG 제42조 b호에서는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적 설계, 디자인, 공식 또는 기타의 명세를 매도인이 따른 결과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침해 또는 그로 인한 클레임이 제기될지라도 매도인의 의무는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이 제공한 기술적 설계 등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물품의 전매 또는 사용이 예상된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의 존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⁴²⁾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지식재산권 존재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시에 따름으로 인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의칙에 근거하여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는 면제되지 않을 것이고 신의칙에 따르는 부수적 의무위반(an ancillary duty)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UCC 제2-312조 제3항에서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명세(specification)를 제공하고 매도인이 그 명세에 순응한 결과 발생하는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매도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hold harmless) 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담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CISG는 매수인의 지시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매도인의 면책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면 UCC는 이러한 상황을 매도인의 면책이 아니라 매수인이 제공한 명세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담보의무로써 규정하고 있다. UCC는 매도인에게 물품에 대한 권리적 담보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매수인은 자신이 제공한 명세에 순응한 매도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이 제3자의 클레임 제기로 인하여 입은 직

42) Christian Rauda and Guillaume Etier, *op. cit.*, p. 57.

43) Enderlein and Maskow, *op. cit.*, p. 170; Ingeborg Schwenzer, *op. cit.*, p. 671.

44) 제2-312조 제3항에서 매도인은 당해 종류의 물품(goods of the kind)을 정기적으로(regularly) 거래하는 상인(a merchant)인 경우에 한하여 담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매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당해 종류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거래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물품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담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결과적 혹은 예외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⁴⁵⁾ CISG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시에 따른 결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게 된다면 신의칙에 근거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ISG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지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매도인 자신의 의무 면제를 위한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하지만 UCC에서 매도인의 통지는 신의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는 UCC가 매수인이 제공한 명세로 인하여 매도인이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담보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통지하였는지의 여부는 매수인의 담보의무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없을 것이다.

3. 매수인의 동의와 인지

CISG 제41조와 제42조에서는 매수인의 동의 혹은 매수인의 인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면책됨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에서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령할 것을 동의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적 합의를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수인의 동의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단순히 인지(*mere knowledge*)한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령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언어 혹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하지만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⁴⁶⁾ CISG 제42조 a호에서는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knew or could not have been aware of*) 경우에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는 면제된다. 제42조에서는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되지만, 제41조에서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되므로 제42조는 제41조보다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면제의 적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UCC에서는 CISG처럼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

45) *Park-Ohio Industries v Tucker Induction Sys.* No. 82-2828, 1987 U.S. Dist. LEXIS 15642(E.D. Mich. Oct. 21, 1987); UCC Official Comment, § 2-312, para 4.

46) Ingeborg Schwenzer, *ibid*; Stefan Kröll, *op. cit.*, p. 642.

을 인지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물품을 수령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UCC가 CISG보다도 매도인이 권리적합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CISG 제42조에서는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인 되는 물품임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매도인은 권리적합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UCC에서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인지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매도인은 권리적으로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V. 결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권리적으로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매도인의 주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매수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물품이 인도되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권리적합의무가 매도인의 주요한 의무라 할지라도 CISG와 UCC에서는 매도인이 권리적합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UCC에서는 명확한 언어(*specific language*)를 통해 혹은 거래의 상황에 따라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ISG에서도 매도인의 면책을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 가능하지만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CISG에서는 매도인의 주요한 의무로서 권리적합의무의 면제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상 명확한 언어로 명시함으로써 매도인 면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다.

“Seller and Buyer hereby agree that the seller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deliver goods which are free from any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now or in the future.”

둘째, CISG 제42조 b호에서는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적 설계, 디자인, 공식 또는 기타의 명세를 매도인이 따른 결과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침해 또는 그로 인한 클레임이 제기되면 매도인의 의무는 면제됨을 규정한다면 UCC는 이러한 상황을 매도인의 면책이 아니라 매수인이 제공한 명세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담보의무로써 규정하고 있다. UCC에서 매수인

은 자신이 제공한 명세에 순응한 매도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제3자의 클레임 제기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결과적 혹은 예외적인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CISG에서 매도인은 동일한 상황에서 면책되므로 제3자가 클레임을 제기함으로써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필요가 없으나, UCC에서 매수인은 제3자의 클레임으로 말미암아 입은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물품의 명세 등을 제공하는 경우 매수인 스스로가 제3자의 권리 존재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침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CISG에서는 매수인의 지시가 충분히 명확해야만 매도인이 권리적합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지시가 충분히 명확한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어떠한 지시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하게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구를 계약상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문구는 다음과 같다.

“Where the buyer furnishes any instruction or specification to the seller, the seller should not be liable under his duty only if complying with the buyer’s instruction or specification actually causes the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claims.”

CISG와 UCC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시에 따른 결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게 된다면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ISG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인지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매도인 자신의 의무 면제를 위한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하지만 UCC에서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의 담보의무에 영향을 끼칠 여지가 없으므로 신의칙에 따르는 것이다.

셋째, UCC와 달리 CISG 제41조에서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령할 것을 동의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동의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임을 단순히 인지(mere knowledge)한 것 이상을 의미하므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임을 매수인에게 단순히 통지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수인이 이러한 물품을 수령할 것을 동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CISG 제42조 a호에서는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이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knew or could not have been aware of) 경우에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는 면제된다. ‘모를 수 없었던(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의 경우 매수인에게 조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은 항상 그러한 권리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

인의 무관심한 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 물품의 사용 또는 전매가 예상되는 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The buyer has to investigate the existen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relevant registers or other relevant publications of the state which the goods will be resold or used. I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gistered in that state and the buyer does not give the seller the notice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will not indemnify the buyer for the third party claims.”⁴⁷⁾

47) Thomas M. Beline, “Legal defect protected by Article 42 of the CISG: A Wolf in sheep’s clothing”, *Journal of Technology Law and Policy*, 2007, p. 27.

참 고 문 헌

- 김선국,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9조(면책)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 오수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 오원석,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物品에 대한 賣渡人의 契約適合義務 - UN 統一賣買法 第35條를 中心으로”,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2.
- 허광욱, “CISG 제42조 (1)항의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소고”, 무역상무연구 제6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 Christian Rauda and Guillaume Etier, “Warranty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ndoba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2000.
- Enderlein and Maskow,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ceana, 1992.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James J. White and Robert S. Summer, *Uniform Commercial Code*, West Publishing Co, 2010.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 Joseph J. Schwerha, “Warranties against Infringement in The Sale of Goods: A Comparison of UCC §2-312(3) and Article 42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1995.
- Ruth M. Janal, “The Seller’s Responsibility for Third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e Vienna Sales Convention”, *FS Kritzer*, 2008.
- P. Schlechtriem and P. Butler, *UN Law on International Sale -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Springer, 2009.
- Stefan Kröll,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H. Beck, 2011.
- Thomas M. Beline, “Legal defect protected by Article 42 of the CISG: A Wolf in sheep’s clothing”, *Journal of Technology Law and Policy*, 2007
- UCC Official Comment

ABSTRACT

A Study on the Exclusion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Joo-Hee MIN

This study describes the exclusion of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under CISG and UCC. Through comparing two provisions, this article provides contracting parties with guidance regarding choosing governing laws and practical advice.

CISG and UCC states not only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but also the exclusion respectively. Under two provisions, contracting parties who wish to avoid this liability may agree that the liability will not apply. Under UCC §2-213(2), the seller's warranty can be disclaimed by specific language in the contract or by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transaction. Although there is no express exclusion provision under CISG Article 41 and 42, Article 6 allows contracting parties to agree that they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seller's liability.

Both Article 42 under CISG and §2-213(3) under UCC provide where the buyer furnishes specification to the seller. Under UCC §2-213(3), it is the buyer's warranty to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y claims which arise from the seller complying with specification furnished by the buyer. But, under CISG Article 42, the seller's duty is excluded if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 seller has complied with specifications provided by the buyer. Therefore Article 42 does not charge the buyer with the duty, but rather limit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 could cause claims under Article 42.

Interestingly, CISG has provisions which are absent from UCC. First, under Article 41, the seller escapes the liability if the buyer agree to take the goods subject to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Second, under Article 42(2)(a), the seller is not liable if the buyer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of the third party right or claim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Keywords : Exclusion of the Seller's Liability, Warranty of Title, Warranty against Infringement, CISG, UCC